

국토교통부



수신 교육부장관 (경유)

제목 「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22.1.28) 관련 재협조 요청

- 1. 귀 기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272(2022.1.28.)의 관련입니다.
- 3. 우리부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22.1.28.)됨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안내 사항을 각급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 4. 특히,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관련 사항이 전국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항공기 **탑승 거절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
 - 1) 만 19세 미만 승객은 학생증으로 탑승이 가능하나 성명과 생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학생증만 인정되며, 학생증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누락된 경우라면 탑승이 거절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법령에서 정한 다른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u>유효기간이 경과한</u>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의 경우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u>유효기간 내에 신분증으로 교체</u>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아울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위와 관련한 법령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항공기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1부. 끝.



주무관 허백용 전산사무관

대결 2022. 2. 28.

이태진

항공보안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항공보안과-516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1943 (2022. 2.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http://www.molit.go.kr 우 30103 항공보안과

/ 대국민 공개 전화번호 044-201-4235 팩스번호 044-201-5626 / whidra21@molit.go.kr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